

2000.12.3안

연합군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일본군이 주둔한 곳이면 어디든지 위안소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자료나 증언을 통해서도 그것은 확인됩니다.(분포도를 가르키며)

이 분포도는 기록과 증언을 통해 위안소가 있었다고 확인한 곳입니다. 각국의 조사에 따라 더 많은 곳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러한 광대한 지역에 위안소가 있었던 것은 한 단위부대의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제가 의도적 조직적으로 제도화한 일본군위안부제도였음을 의미합니다. 최고책임자인 천황 히로히토, 수상 도조 히데키 등의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부가 조선인에게만 해당하는 분포도는 아닙니다만, 위안소로 표시된 곳 대부분이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연행되어 배치된 곳은 바로 일본군의 영향권과 거의 일치합니다.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 이후 점령한 곳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일전쟁 이전에 일본이 점령한 곳인 조선(한국), 대만, 중국 동북부에도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곳은 오키나와입니다. 현재 생존한 분을 찾지 못하여 별로 다루지 못하였지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크게 진작시킨 배봉기 할머니가 계셨던 곳입니다.

(배봉기할머니 사진과 오키나와 위안소 분포도)

이곳은 비어마 필리핀과 더불어 조선인 피해자들의 명단도 발견된 곳입니다.

(필리핀 및 비어마 자료 및 사진)

이렇게 많은 지역에 조선인 피해자가 있는 것은 한국을 일본군 위안부의 안정적인 공급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조선인 '위안부'는 오키나와, 중국 최진선, 비어마, 인도 안다만제도 라바울 등지의 진선최진망까지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존이 위협 받는 장소에서까지 성적으로 착취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위안소의 존재와 위안소범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머니들의 피맺힌 증언이 담긴 증언집입니다. 판사단에도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안소 내에서 어떠한 피해를 당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한국 피해할머니를 향해)

생존자가 여러분 있고 여기에도 많은 할머니가 오셨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몇분의 이야기만 듣는 것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여기 갇힌 피해자 증인과 몸이 아파 여기까지 오시지 못한 김복동 김군자 증인들의 비디오 증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 김군자 증인들의 비디오 증언 각각 5분 합 10분 송신도??

김복동 김군자 할머니에게 가해진 범죄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내용 언급

김복동은 광둥에서부터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안소로 끌려다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광둥 지역은 안도 리키치 사령관이 지휘하는 제21군대가 군위안소를 만들었고 사령관이 내무성과 대만총독부에 '위안부'의 차출을 요구하였던 곳입니다. 1939년 4월에 제21군대의 총사령관은 위안소를 설립하였고, 그 군대가 관리하는 '위안부'의

수가 850명이라고 보고하였다.

(안도 리키치 관련 문헌 파워포인트)

생존자 증언: 박영심(김영숙)/문필기/하군자 할머니

박영심 할머니

이동 상황

비어마 중국 국경지대 상황

임신한 사진

박영심은 1938년부터 시작해서 약 3년동안 난징의 '긴시로(금수로)' 위안소에 있었다. 군대 병영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던 위안소는 들레가 철조망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그녀의 일본이름은 '우다마루'였다. 박영심이 있었던 이 지역은 그 당시 하타 순로쿠의 지휘아래 있던 중지나 파견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곳에서 다시 두 명의 일본군의 감시 아래 상해를 거쳐 비마의 라시오에 있는 위안소로 보내졌다. 그 당시 라시오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비마방면군 56사단 사령부였고, 사령관은 마츠야마 유조였다. '이카쿠로' 위안소는 마을과 동떨어진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그 곳에서 '와카하루'라는 일본이름으로 불렸다.

2년후에 그녀는 다시 56사단 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비마의 라멩(혹은 마츠야마)으로 이동했다. 그녀가 도착하자 마자,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와 다른 '위안부'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한 가운데까지 군인들을 위해 주먹밥을 날라야만 했다. 거기에 있었던 12명의 '위안부'들 중에서 8명은 공중포격으로 죽었고 4명만이 살아 남았다. 일본수비대가 패배했을 때, 그녀와 다른 세 명의 조선인 '위안부'는 중국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 그 당시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문필기 할머니는 만 열여덟살(1943년)에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일본인 순사 다나카와 동네 일본인 앞잡이하는 아저씨를 따라 부산으로 갔지요? 당시 부모 허락을 받지 않으면 취업도 조선 밖으로 이송도 불가능하는데 허락은 받았습니까?

확인요-기차로 타고 신의주를 지나 한참?? 몇일걸려서?? 국경근방인듯

위안소를 지키는 군인이 있었습니까?

-위안소 가까운 부대소속 군인들이 교대로 파견나와 보초를 섰다.

위안소에 가서 성병검사를 하였지요?

그 후 바로 위안소에 군인이 왔습니까?

아니요. 몇 달동안 간호부일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위안부노릇을 하였습니다.

(문? 할머니 일본군이나 위안소에서 조선사람이라는 이유로 구박을 받거나 별이나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코구신민나리로 시작되는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라든지 일본말말을 하지 못한다고 혹은 조선말을 쓴다고 구박받은 일은 없습니까?)

어떤 군인은 위안소에서 다다미에 깔을 꿋고 강간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거절하다가 시뻘겋게 달군 인두같은 것으로 거드랑이를 지켰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까?---군위안소에서 군인이 업자나 관리자 위에 군림하였음을 보여주는 질문

문필기할머니와 김군자할머니에게 가해진 범죄에 대해선 관동군사령관이었던 우메즈 를 기소합니다.

하군자할머니는 열네살 먹던 1944년 6월경? 중국에 공장에 가신다고 듣고 돈을 빌려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조선인 남자 두명을 따라 무한까지 갔다는데 맞습니까?

무한에 내린 것이 1944년 12월이고 적경리 三成樓였다는데 맞습니까?

적경리 삼성루에 처음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군인병원?)의사검진

병참위안게로 출두하였다는데 그곳에선 무엇을 하였습니까?

군인이 할머니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런일을 당할 때나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순순히 응하셨습니까?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군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위안소에서의 강간으로 몸에 이상은 없었습니까?

임신이나 성병에 관해/이후 애를 낳으려고 했을 때 낳을 수 있었는지 당시 부대 이름 중에 사쿠라부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쿠라부대 확인

할머니 그곳에서는 할머니가 그만두고 나오거나 외출이 자유로웠습니까?

할머니는 열네살에 중국 무한에 가서 지금까지 무한에서 살고 있지요?

왜 무한에서 귀국하지 못하였습니까?

하군자할머니가 간 시점에 조선총독은 아베?

-1944년 하상숙이 있었던 지역도 역시 오카무라 야스지의 지휘아래 있던 중국파견군의 점령지역이었습니다.

오카무라 야스지는 1932년 상해파견군참모장으로서? 상해지역에 군위안소를 설치하였고, 1938년엔 중지나 제 11군 사령관으로서 1938년 10월 27일에 그의 상관인 중지나 파견군 사령관인 하타 슌로쿠와 제 11군 참모관들과 걸탁하여 한구의 제 11군 부대에 위안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후엔 지나군총사령관?

오카무라 자료화면

하군자할머니가 있었던 무한지역은 오카무라 야스지가 지나군총사령관으로 있었던 곳입니

다. 이자는 스스로 1932년 상해지역에 군위안소를 설치하였던 자이며 1938년 군 사령관으로서 무한지역에도 위안소를 설치하였던 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 오카무라 야스지를 기소합니다.

귀국하지 못한 조선인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히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타국에서 생존한 피해자가 명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증인 하군자할머니와 같이 일본군이 그냥 내버리고 귀국해서 자신의 힘으로 귀국하지 못하여서 혹은 이몸으로 어떻게 귀국하는가 하는 조선전통시대의 정조관념 때문에 처음에는 돌아오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군자할머니의 예를 보듯이 15세의 어린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군이 위안부로 이용하다가 유기하였기 때문에 결국 귀국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역시 천황 이하 관련 군 관 책임자의 범죄입니다.

-증인의 이야기를 들은대로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왜 끌려가는 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행된 소녀들에게 위안소에서 처음으로 자행되는 일이 강간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대부분은 성적인 경험을 전혀 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강간은, 위안소의 엄격한 통제아래 하루에서 수십번씩 몇 달, 몇 년에 걸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먼 이국땅에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가 실패한 이후 채념한 상태로 반복적인 강간과 구타 등을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숙할머니가 증언한 것처럼 질을 뺏힌다고 마취도 없이 강제로 찢는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무한에 있었던 홍강림할머니의 경우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필기 할머니도 일본군에 의한 고문, 상해, 고의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조선인 '위안부'들 역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반복되는 윤간으로 인해 성기가 손상되고 성병에 전염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재생산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살아남은 희생자들에게 전 생애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계속되는 강간 상태에서 어떠한 종류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기 결정권도 박탈당한 채, 노예와 같은 조건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들은 군인들이 감시하에 사실상의 감금 체제 하에 있었다. 운신의 자유는 거의 없었다: 휴일날 외출을 할 때에도 감독하는 군인이 여성들에 동행했다.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공개적인 참수를 수반하는 지독한 처벌이 내려졌다. 비록 이러한 용도를 위한 군표가 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 매우 자주, 아프거나 생리중이거나 임신한 '위안부'들도 일본군을 받도록 강요 당했다. 규정상으로는 군대에서 나누어주는 피임기구('샷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 여성들은 또한 요리, 세탁, 간호와 같은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위안부'의 상태가 이미 일종의 노예제였지만, 이동 군위안소에 소속된 군위안부 여성들(특히 한국인 군위안부 여성들)은 인제나 전신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더욱 위협했다. 그 결과, 민간인 여성들은 노예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군대의 의도에 달려있게 되었다.

이것은 군위안소 규정이 일본군입부규정내에 있고 군인이나,임자,위안부들이 이에 철저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본군은 몸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성노예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 중 한 예는 오키나와의 제24사단 제3475부대의 1944년 12월 20일의 위안소 규정이다. 제24사단장은 육군중장 아마미야 쿠수미()였다.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들은 "공동 소유의 개념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점유의 개념(또는 개인적인 소유)의 개념은 금해야"하며, "위안부 여성들은, 고객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며, 공평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봉사할 것으로 명심하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하여 몸을 망가뜨리거나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얼마나 일본군 차원에서 군위안부를 노예화하고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는가를 잘 알게 합니다.

김복동, 문필기, 강순애, 돌아가신 문옥주 할머니 등은 일본군 간호부로의 일도 강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신도 할머니는 이동위안소를 따라 성노예로 있으면서 일본군 보초를 서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었던 이들이 일본군의 요구에 따라 성노예로, 노동노예로도 언제든지 역할이 바뀌어 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군의 노예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경우의 살인이 있었다. 위안부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 폭행이 가장 극단적으로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다. 살인은 때때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

위안부들이 전방이나 전방으로 가는 일본 군대를 따라 강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후퇴를 하는 동안에도 일본군들은 위안부들을 성노예로 부렸다.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행위로 취하지 않았다. '위안부'들은 일본 군대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소모품으로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매독과 같은 성병에 감염되어 많은 위안부들이 죽었다. 다른 사람들은 결핵과 말라리아로 죽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강간과 노예적 상황으로 인해, 위안소에서 많은 위안부들이 자살을 하였다. 김복동과 김군자는 각각 광둥과 훈춘의 위안소에서 도망도 할 수 없고 너무나 비참해서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가 임신했을 때, 그들은 인공유산에 당해야만 했다. 황금주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606호를 맞았을 때, 그녀는 몸이 붓고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고 하혈했다. 그때 그들은 그녀를 군 병원으로 데려갔고 군의관이 자궁 안을 긁어냈다. 이런 식으로 서너번 긁어낸 후 임신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강제 유산이며 유아유기, 유아살해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차별 행위는 광범한 조선여성들을 연행하여 위안부로 삼았다는 것과 최전방에 조선인위안부 배치, 위안소에서 정해진 요금의 차별, 위안소에서의 일본어 사용 강요의 예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방에 보내진 대부분의 위안부는 한국인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이것은 민족차별적 행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개개인은 생식 기관의 파손, 임신 방해, 낙태 등 위안소 안에서 행해진 다양한 범죄 행위들은 위안부가 일본 병사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한 군수 물자나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폭력적 행위들은 고립적인 사건들이라기 보다는 일본의 위안소 정책의 귀결이었

다. 하지만 이러한 야만적 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알려진 처벌 사례는 없다.

-일본군은 위안소에 갈 수 있는 요일, 시간, 요금 등 위안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본군의 필요에 의해 위안소나 위안소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민간 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위안소라도 역시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군 위안부는 군의 일부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안부에 대한 성병 검진도 군병원에서 하였고 군위안부가 군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위안소 규정에 대한 사진과 자료화면- 복수로 제시

한씨 할머니의 병원사망기록 오키나와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마츠야마 유조는 적어도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천황, 수상, 육군대신, 조선총독, 군사령관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서로 협조하여, 위안소 설치를 승인, 허가, 용인, 방치하였으며, 위안소를 비롯한 여타의 성적 노예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군위안부로 할 조선여성 동원, 그리고 위안소에 동원된 조선여성에 대한 반복적인 강간과 노예화, 지속적인 육체적 심리적 폭행, 강제 노동과 비인간적 대우등의 성격을 띠는 위안부의 생활을 강요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마츠야마 유조는 강간 및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처우, 고문과 고통, 상해, 인간의 존엄성 유린을 일으키는 고의적 행위/노예화, 불법적인 감금, 비인도적인 처우, 의도적으로 고통을 야기시킴, 민간인 공격, 과도하게 고의적인 죽임, 상해, 손해, 민간인 공격, 의도적 학살, 살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처우, 강요된 불임과 같은 전쟁범죄와 강간 및 비인도적인 처우, 고문, 노예화, 학대, 살해, 비인도적 처우??와 같은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기소합니다.